



제417회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유사수신행위에 이용된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
■ 민형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242호)

2024. 8.

정 무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민형배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4. 6. 10.
3. 회 부 일 : 2024. 6. 2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에 관한 지급정지 규정과 동일한 기준을 유사수신행위에 이용된 계좌에도 적용하고자 합니다. 불법 리딩방 사기 피해 사전 예방과 신속 구제를 위한 것입니다.

주식리딩방, 사설 FX(Foreign Exchange)마진거래 투자 등에서 금융취약계층을 노린 사기사건이 많습니다. 이러한 신종 불법금융 사기범죄는 정보통신기술 발전에 따라 지능적으로 변합니다. 그 피해 규모 및 피해자 범위도 확대됩니다.

현행법에 주식리딩방 등 유사수신행위로 인한 범죄수익에 대한 지급정지 규정이 없습니다. 수사기관에서 해당 금융사기범죄 수사를 진행하더라도 범죄수익에 대한 지급정지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범죄자들이 남아 있는 범죄수익을 빼돌리면 사실상 피해자에 대한 사후구제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에 금융회사가 자사의 거래계좌 중 유사수신 거래로 추정할만한 사유가 있는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금융회사가 이를 위반하여 해당 계좌로 금융거래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조속한 피해자 구제를 도모하고자 합니다(안 제3조의2, 제3조의3 및 제8조제2항 신설).

Ⅲ. 검토의견

- 개정안은 유사수신행위에 이용된 계좌에 대해 금융회사가 지급정지 조치를 하도록 하고, 해당 계좌의 명의인은 지급정지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하며, 개정안에 따른 의무(지급정지 및 그 통지 등)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등).

현행	개정안
<신설>	<u>제3조의2(지급정지) ① 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거래내역 등 확인을 통하여 제3조를 위반한 유사수신행위에 이용되는 계좌(이하 “이용계좌”라 한다)로 추정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즉시 해당 이용계좌의 전부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u> <u>1. 피해자의 피해구제 신청이나 지급정지 요청이 있는 경우</u> <u>2. 수사기관 또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이용계좌라는 정보제공이 있는 경우</u> <u>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u> <u>② 금융회사는 제1항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를 한 경우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해당 지급정지 조치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u> <u>1. 피해구제 신청이나 지급정지 요청을 한 피해자</u> <u>2. 정보를 제공한 수사기관 및 금융감독원</u> <u>3. 지급정지된 이용계좌의 명의인</u> <u>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피해구제 신청, 지급정지 요청의 방법·절차, 지급정지조치의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현행	개정안
<u><신설></u> 제8조(과태료) ① 제5조를 위반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기 위하여 금융업 유사상호를 사용한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u><신설></u>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제3조의3(지급정지에 대한 이의제기) ① 이용계좌의 명의인은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가 이루어진 날부터 2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해당 계좌가 유사수신행위에 이용되지 아니한 사실을 소명하고 금융회사에 지급정지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금융회사는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이를 접수하고 즉시 피해구제 신청 및 지급정지 요청을 한 피해자, 수사기관 및 금융감독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제기의 방법·절차·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금융회사 2. 제5조를 위반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기 위하여 금융업 유사상호를 사용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해당 지급정지 조치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지 아니한 금융회사 2. 제3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명의인의 이의제기를 피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금융회사 ③ 제1항 및 제2항에----- ----- -.

□ 현행법상 “유사수신행위(類似受信行爲)”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 조달을 업(業)으로 하는 행위로서, 자금의 전액 또는 그 초과 금액의 지급을 약정하고 출자금, 예금·적금·부금·예탁금, 사채(社債) 매입대금, 회비 등을 받는 행위를 말함(§2).

○ 유사수신행위의 개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원금 보장”에 대한 약정 여부이며,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 것만으로 범죄가 성립하고(§3),¹⁾ 유사수신행위의 표시·광고와 유사수신행위를 하기 위한 금융업 유사상호의 사용은 법에 의해 금지되고 있음(§4·§5).²⁾

□ 최근 무위험, 고수익으로 재산 증식을 원하는 심리를 악용하여 원금보장을 약정하며 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행위가 지속 성행하고 있고, 신종·신기술 분야 또는 최신유행 분야 사업을 빙자하거나 온라인을 활용하여 투자자를 유인하는 등 그 수법과 행태가 고도화되고 있음.

○ 금융감독원 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유사수신행위 신고·상담 건수는 2020년 692건, 2021년 680건, 2022년 563건, 2023년 867건임.³⁾

1) 유사수신행위는 구조화된 경제위기 속에서 경제 취약 계층의 투기 심리를 파고들어 건전한 금융질서를 파괴하는 범죄로서, 특히 그 피해가 경제적 약자에게 빈번하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큼. 김현수, 「유사수신행위의 불법성 구조와 유형 분석의 지평」, 『형사정책연구』 제28권제3호, 2017.

2) 유사수신행위의 표시·광고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6②), 유사수신행위를 하기 위하여 금융업 유사상호를 사용한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8①).

<연도별 유사수신 신고 접수건수* 및 수사의뢰건수>

구 분	2020	2021	2022	2023
신고·상담	692건	680건	563건	867건
수사의뢰	58건	61건	65건	47건

*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유사수신으로 접수된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상담 건수
(자료: 금융감독원)

○ 최근에는 불법 업체가 온라인으로만 자금을 모집하여 잠적 후 다른 사이트 개설 등을 통해 동일한 수법으로 투자금을 편취하거나, 유튜브·블로그 등에서 영상 및 광고글을 다량 게시 후 투자자 스스로 홈페이지에 방문해 투자하도록 하는 등 신종 피해 사례가 확산되고 있음⁴⁾.

□ 이처럼 유사수신행위의 유형과 수법이 다양화·고도화되고, 그에 따른 피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법 체계 하에서는 피해자가 신속히 피해구제를 받기 어려운 것이 사실임.

○ 피해자가 은행 등 금융기관의 계좌를 통해 자금을 보냈을 경우, 가장 일반적인 환급 방법은 이체에 사용한 예금계좌 소유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에 의해 환급을 받는 방법이나,⁵⁾ 이는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해당 계좌에 잔액이 남아 있지 않은 경우에는 실질적인 구제가 이루어지기 어려우며,

3) 금융감독원 제출자료

4)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부동산 펀드로 원금보장·고수익이 가능하다고 현혹하는 유사수신회사를 주의하세요!(2024. 6. 4.)”, “온라인에서 성행하는 유령 유사수신 업체’를 조심하세요!(2024. 1. 26.)”

5) 경찰청, 「인터넷 사기 이용 계좌 지급정지 방안 연구」, 2019.12.

○ 피해자가 경찰에 해당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신청을 하고, 경찰이 의심 계좌가 개설된 은행측에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범죄의 예방과 제지)에 근거하여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은행이 이에 응할 의무가 없어 지급정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⁶⁾⁷⁾

□ 2019년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이 법의 적용 대상으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유사수신행위’가 포함⁸⁾됨에 따라 유사수신행위로 인해 발생한 범죄피해재산은 몰수·추징보전⁹⁾ 될 수 있고, 최종적으로 몰수·추징된 범죄피해재산을 피해자에게 환부¹⁰⁾할 수 있게 되었음.

6) 실무에서 보이스피싱과 여타 인터넷 사기와의 구분이 모호하다는 이유로 경찰의 계좌 지급 요청을 은행이 빠른 시간 내에 신속히 인용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경찰청, 앞의 글

7) 2023년도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2023.10.17.) 신종금융사기 피해자가 경찰·검찰을 통해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은행별로 이에 대한 대응이 상이하다는 지적이 있었음.

8)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범죄피해재산"이란 별표에 규정된 죄 가운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그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또는 그 재산의 보유·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을 말한다.

가. 「형법」 제2편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중 제347조, 제347조의2 및 제351조(제347조 및 제347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죄[「형법」 제114조에 따른 범죄단체를 조직하여 범행한 경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유사수신행위 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다단계판매의 방법으로 기망(欺罔)하여 범행한 경우 및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특정사기범죄"라 한다)로 한정한다]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중 「형법」 제347조, 제347조의2 및 제351조(제347조 및 제347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죄(특정사기범죄로 한정한다)

9)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8조(「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별법」의 준용) 이 법에 따른 몰수 및 추징과 국제공조에 관하여는 「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별법」 제19조부터 제63조까지, 제64조제2항 및 제65조부터 제7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별법」 제33조(몰수보전명령) ① 법원은 마약류범죄 등에 관련된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에 관하여 이 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몰수할 수 있는 재산(이하 "몰수대상재산"이라 한다)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 재산을 몰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검사의 청구를 받아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몰수보전명령을 함으로써 그 재산에 관한 처분을 금지할 수 있다.

제34조(기소 전 몰수보전명령) ① 검사는 제3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이유와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소가 제기되기 전이라도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처분을 받을 수 있다.

○ 다만, 몰수는 범죄행위와 관련된 재산을 박탈하여 국고에 귀속시키는 조치이고, 추징은 몰수를 할 수 없을 때 그에 갈음하여 가액의 납부를 명하는 사법처분으로, ① 몰수·추징(보전) 절차는 검사의 청구, 법원의 결정을 거치며 일정한 시간이 소요되고, ② 범죄피해재산에 대한 몰수·추징은 피해자가 범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어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이루어짐.

□ 따라서 유사수신행위에 이용된 계좌에 대해 피해자의 신청 등이 있는 경우에 금융회사가 지급정지 조치를 하도록 하는 개정안은 유사수신행위에 의한 피해를 신속하고 용이하게 구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임.

○ 구체적으로 개정안은 ① 유사수신행위 피해자가 피해구제 신청을 하거나 지급정지 요청을 한 경우,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이 유사수신행위에 이용된 계좌라는 정보제공 등이 있는 경우에 금융회사가 유사수신행위에 이용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 조치를 하도록 하고(안 제3조의2제1항), ② 해당 계좌의 명의인은 지급정지가 이루어진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금융회사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하며(안 제3조의3제1항),

10)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6조(범죄피해재산의 특별) ① 제3조의 재산이 범죄피해재산으로서 범죄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몰수·추징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라 몰수·추징된 범죄피해재산은 피해자에게 환부(還付)한다.

- ③ 지급정지 조치를 하거나 이의제기 접수를 받은 금융회사는 피해자 등에게 이를 통지하도록 하고(안 제3조의2제2항·제3조의3제2항),
- ④ 지급정지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참고로,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서 개정안과 유사하게 보이스피싱 사기이용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관련 조항이 규정되어 있음.

-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는 지급정지제도 외에도 채권소멸절차와 피해금 환급 등에 관한 규정도 함께 규정하고 있어, 피해구제를 위한 추가적인 절차를 명시하고 있음.
- 또한, 명의인이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명하는 경우 등에는 금융회사가 지급정지를 종료하도록 규정하고, 거짓으로 피해구제신청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선의의 명의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도 함께 규정¹¹⁾하고 있음.

11) 헌법재판소(2022. 6. 30. 선고 2019헌마579 전원재판부 결정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법정의견)는 현행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상 지급정지 규정이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이나, 이러한 선의의 명의자 보호규정으로 인해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었고, 법인의 균형성도 인정되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결정을 한 바 있음.

[표 1]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절차

절차	내용	근거조항
① 지급정지 및 피해구제 요청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사기범에게 자금을 이체한 계좌(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지급정지(입출금·이체 금지)요청 및 피해구제 신청	§3①
② 지급정지	금융회사가 보이스피싱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지급정지(입출금·이체 금지) 실시 ※ 수사기관·금융감독원의 정보제공 또는 금융회사의 자체점검 등을 근거로 지급정지도 가능	§4①
③ 지급정지 통보	금융회사가 금감원, 명의인, 피해자 등에게 지급정지 사실을 통보	§4②
④ 채권소멸절차 개시 요청	금융회사가 금감원에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의 예금채권을 소멸하기 위한 절차 개시 공고 요청	§5①
⑤ 전자금융거래 제한	금감원이 ③에 따라 통보받은 명의인을 전자금융거래 제한 대상으로 지정	§13의2
⑥ 채권소멸절차	④의 요청에 따라, 금감원이 채권소멸절차가 개시된 사실을 공고	§5②
	(이의제기 등 없을시) 2개월 후 예금채권 소멸	§9①
⑦ 피해금 환급	채권소멸 후 금감원이 14일 내 피해환급금을 산정하여 피해금 환급 결정 → 금융회사를 통해 피해금 환급	§10①
⑧ 전자금융거래 제한 종료	피해금 환급 지급이 종료된 경우 전자금융거래 제한 종료	§8

(자료: 관계부처합동, 「보이스피싱 척결 종합방안」, 2020. 6., 18쪽 재구성)

□ 동 개정안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현재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범죄수익 보전·환수 절차가 이미 존재¹²⁾하고, 금융회사는 수사권이 없으므로 거래 내역 등에 관

12) 2022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에 해당(유사수신행위의 경우 이에 해당)하면 이 법에 따라 범죄수익 등의 몰수·추징(보전)이 가능하나, 동법 제8조제3항에서 범죄피해재산인 경우에는 몰수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몰수한 범죄수익 등에 대한 피해자 환부 조항이 없으므로, 이 법을 통해 유사수신행위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은

한 확인을 통해 그 거래가 유사수신행위로 인한 것임을 파악하기도 곤란한 측면이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금융기관의 경우 송금이나 이체 행위 외에 해당 계좌가 유사수신행위에 이용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음.

○ 유사수신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①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등록·신고¹³⁾ 등을 하지 않았는지 여부, ②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였는지 여부, ③ 장래에 원금을 지급할 것을 보장하였는지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유사수신행위에 대해서도 지급정지를 도입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유사수신행위에 의한 피해를 신속·용이하게 구제할 필요성과 금융위원회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다만, 유사수신행위에 대해 지급정지 제도를 도입하려는 경우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련 절차 및 선의의 명의자 보호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 금융회사가 유사수신행위인지 여부를

어려움.

13)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신고를 포함

판단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수사기관 등의 요청에 의해서만
지급정지를 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106
